【별표 1】 채용 결격사유

『공무직직원관리내규 제5조(결격사유)』

제5조(고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인사규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부조리 등 징계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자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별표 2】 설비분야 대상 자격증

구 분	기술사 등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능사
기 계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배관기능장 용접기술사(기능장) 가스기술사(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사 일반기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설비보전기사 용접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용접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기계정비기능사 설비보전기능사 공유압기능사 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통 신	정보통신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소 방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기계) 소방설비기사(전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그라운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 상기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자격증 명칭 변경 등 상기 자격증의 연혁 자격증은 인정)